

# 예산총칙

2015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88,905,003	14,667,150
일반회계	483,049,945	14,491,498
특별회계	5,855,058	175,652
기타특별회계	5,855,058	175,652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3,052,499	91,575
주택사업특별회계	129,134	3,874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1,104,792	33,144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62,767	1,883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1,098,564	32,957
천사성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407,302	12,219

제 2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

제 4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할 수 있다.